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0-0066786)	명동글로벌 (P*M)	증가로2안길 25-9 (연희동)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25. 2. 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0-0105908)	위고케이오 (김*희)	연희로 192 (연희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1-0066877)	주식회사 리연바이오케미칼 (장*원)	연세로 50 (신촌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2-0080584)	굿굿즈 (장*경)	신촌로 25 (창천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1-0066828)	파이브에이엠 (조*람)	신촌로 25 (창천동)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1-0066162)	(주)허쉬글로벌 (허*구)	신촌로 25 (창천동)			

2. 공고기간 : 2025. 2. 6. ~ 2025. 2. 21.

3.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김민희, ☎02-330-8478)